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8호 참조]

제1조(총칙)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의 도급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업무”라 함은 “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3.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이 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달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 의무 양도)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본 계약서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제4호 가목 중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제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시 “갑”은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은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을”이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갑”에 귀속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③ “갑”은 계약의 의무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제8조(“을”의 근로자) ① “을”은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

다.

②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갑”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을”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착수 및 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에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을”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갑”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이행의 자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증감된 과업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용역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증감된 과업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⑤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을”的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자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갑”은 제5항에 따른 “을”的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갑”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따른 완료대가 수령전 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3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은 용역계약에서 제12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1.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검사에 들었던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갑”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을”은 제14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을”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① “을”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참여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4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 ① “갑”은 제16조에 따른 검사에 의하여 계약이행완료를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수요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인수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계약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일반적 손해) “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0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1조(특허권의 사용) ① “을”은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이 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을”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방어 또는 면책시켜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16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돌려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돌려 보낸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제외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갑”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 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4조(“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을”의 계약이행 가능성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을”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영업정지, 부도, 회생절차 착수 등 포함)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제2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한다.

1. 기성부분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26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7조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27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갑”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을”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④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갑”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남은 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남은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자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을”의 용역정지 등) ① “을”은 “갑”이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문서로서 그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않된다.